

미래식량자원연구소 규정

제정 2025. 12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미래식량자원연구소(이하 "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곤충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식품, 스마트가공기술, 산학협력 및 실증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, 지역 및 국가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.

제4조(사업내용)

1. 본 연구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2. 곤충식품 및 기능성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·기술개발 사업
3.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, 시제품화 및 실증사업
4. 교육, 정책연계, 홍보 및 지역산업 확산사업
5. 국내외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5조(구성) ① 본 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소장
2. 감사
3. 운영위원회

제6조(소장) ① 소장은 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, 연구소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감사) ① 감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감사는 매년 2월 말에 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연구소의 당해 연도 예·결산
2. 연구소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
3. 기타 운영위원회 의결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한다.

② 소장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은 연구소 소속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 9조 (회의)**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을 때 회의를 소 집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주요 사업계획 및 운영방법
 2. 예산 및 결산
 3. 규정 개정 발의
 4.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④ 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, 참석한 운영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0조 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교외수탁연구비 및 산학협력 수탁연구비의 간접경비
2.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 및 기술이전 수입
3.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,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입누적금 4.기부금 및 후원금 등 기타 보조금

제11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5 장 폐 소

제12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제 6 장 보 고

제13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— 다음해 3월 말까지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— 다음해 3월 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— 매년1월 말까지
4.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자료

제 7 장 보 칙

제14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5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 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